



공공데이터 개방
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(제12조)과 제공목록(제19조)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, 법률 제 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공공데이터 정의

- 데이터베이스,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(光)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

개방의미

-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
 -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고알고, 제공받은 정보를
 - 상업적·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

구분	공개(정보공개법)	개방·제공
목적	국민 알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	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,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
대상예시	기관장 업무추진비, 출자내역 등	실시간 교통정보, 날씨정보, 위해식품정보, 관광정보, 공장등록정보 등

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

구분	직위	성명	전화번호
제공책임관	부군수	소상원	061-470-2204
제공담당	총무과장	김광호	061-470-2210
제공실무자	지방전산9급	김도건	061-470-2400